

새날 장로교회 운영내규

New Days Church by Law

새 날 장 로 교 회

New Days Church

2026

새날장로교회 운영내규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과 위치

본 교회는 새날 장로교회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New Days Church라 하며, 3468 Duluth Hwy. Duluth, GA.30096에 위치한다. (이하 애틀랜타 새날 장로교회를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조 설립 일자

본 교회의 설립 일자는 첫 구성 성도들의 예배를 기념하여 2001년 5월 27일로 한다.

제 3조 교단

본 교회는 합동개혁장로교회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이하 A.R.P.C)에 속한 노회 (Cumberland Valley Presbytery)의 회원 교회이다.

제 4조 목적

본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회로써 창조주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지역을 위한 봉사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장 신조

제 5조 신조

1.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신앙생활

의 원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2.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일체가 되시는 한 하나님께서 각 위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3.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특권이다.
5. 사도 신경과 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합동개혁장로교회 헌법(A. R. P Book of Church Order)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 3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 6조 교회 정치의 원리

- 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의 봄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받은 믿음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 충성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 (엡4:15-16/고전12:27-31/롬12:3-8)
- ② 본 교회는 성경적인 정치 원리의 하나인 장로회 정치 체제(출30:16 18:25-26/ 민11:16/ 행15:23/딛1:5/행18:4/약5:14)를 채택하여 웨스트민스터 헌법과 합동개혁장로교회 (A.R.P.C) 헌법을 기본으로 한 본 교회의 내규에 따라 공동 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며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만 있고 성도들을 통하여 시행되는 하나님 중심의 민주적 정치 원리를 준수한다.

제 4장 교인

제 7조 교인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원입 교인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인으로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

② 세례 교인

- 유아 세례-부모가 세례교인으로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기로 약속하고 세례

받은 6세 미만인 자.

- 아동 세례-부모가 세례교인으로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기로 약속하고 세례 받은 6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
 - 입교 교인-유아 및 아동 세례를 받고 16세가 되어 신앙고백을 하고 입교한 자와,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 영세]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하여 3개월 후에 당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출석 교인-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만 하는 자
 - 활동 교인-세례 받은 16세 이상 교인으로 본 교회 등록 후 3개월 이상 주일 예배에 출석한 자
- ③ 타 교회로 이적한 교인과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교인은 교적부에서 삭제하며,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의 동의없이 이적한 경우는 이적한 일자를 기준하여 그 직분을 박탈한다.

제 8조 교인의 의무

모든 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

- ①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한다.
- ② 현금생활[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재능에 따라 성실하게 봉사한다.
- ④ 경건한 생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교회의 치리에 순종한다.

제 9조 권리

- ① 모든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한다.
- ② 활동 교인은 공동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5장 조직과 운영

제 10조 본 교회 운영을 위하여 공동의회, 운영위원회, 당회를 둔다.

제 1항 공동 의회

- ① 정기 또는 임시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② 회원의 자격 : 제 4장, 제 9조 2항에 해당하는 교인으로 한다.(활동 교인)
- ③ 임원 : 의장은 본 교회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단 당회장 부재 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원 중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소집 : 공동의회는 정기 공동의회와 임시 공동의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 정기 공동의회: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2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서 공고한다. 매 해 1월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예산심의, 목회보고 및 기타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 Ⓑ 임시 공동의회: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활동 교인 1/4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2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서 공고하고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의 또는 결의 한다.
- ⑤ 개회 성립 : 정기 공동의회는 참석 숫자와 상관없이 성수가 되고 임시 공동의회는 청원한 회원 1/4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에 개회가 성립된다.
- ⑥ 안건의 가결 : 참석한 교인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담임목사 청빙, 행정내규의 수정, 재산권 변경, 장로 및 안수집사 선거는 2/3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⑦ 임시 공동의회 안건 : 담임목사 청빙, 행정내규 수개정과 교회재산권, 교단 가입 및 탈퇴, 장로 및 안수집사와 권사 선거 등.

제 2항 당회

- ① 구성 :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하고 시무 장로가 1인일 경우 협동장로나 은퇴 장로가 당회원이 될 수 있다. 협동장로나 은퇴 장로도 없을 경우 노회에 요청하여 파송 받아 당회를 구성한다. 성수 당회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당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회가 된다.
- ② 소집 : 정기 당회는 1개월에 1회씩 모이며, 당회장 또는 장로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당회장이 임시당회를 소집해야 하며, 성수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회가 된다.
- ③ 직무 :
 - Ⓐ 교회의 행사 계획, 예산 및 결산과 재정 사항을 심의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 Ⓑ 임시직 채용 및 임명, 성찬, 세례, 입교 교인 심사와 인준, 항존직 자격심사, 세례교인을 선정한다.

- ⑤ 예배를 주관하며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범죄한 교인 또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인을 치리한다.
 - ⑥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될만한 교인을 추천하여 시상한다.
 - ⑦ 서리집사, 구역장, 교구장,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 등을 임명한다.
 - ⑧ 당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위탁된 특별 기금, 현금, 유가 증권, 교회의 재산을 관리보호한다. 단, 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판매, 저당, 매입, 용자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구비 서류 : 교적부, 유아세례 명부, 세례교인 명부, 활동교인 명부, 이적교인 명부[안수집사이상] 상별교인 명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3항 운영위원회

- ① 구성 : 당회원, 협동장로와 기관장, 부서장, 구역장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당회장이 한다.
- ② 직무
 - Ⓐ 당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경과한 후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 Ⓑ 각 기관, 각 부서, 구역 등 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 기관 부서 담당자가 계획을 보고한다.
- ③ 소집 : 매월 당회 후 첫 주 토요일에 소집하며 필요시 당회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 6장 직분과 직무

제 11조 본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 12조 Ⓢ 항존직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이며 임시직은 서리집사, 부교역자 및 직원이다.

⑧ 타 교회에서 전입된 항존직의 경우에는 임직파 사본, 임직 예배시 순서지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임시직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명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7장 목회자

제 14조 목사

① 자격 : 정규 대학 또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 석사[M. Div] 학위 이상을 받고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며 목사 안수 받은 자로서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무 :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고후5:20, 앱6:20]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벧전5:2-4]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벧전5:1-4]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딛1:9, 딤후1:11]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딤후4:5]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눅12:42]

③ 구분 : 담임목사-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당회나 운영위원회, 공동의회 의장이 된다.

부목사-부목사, 교육목사 등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들로 매년 당회의 시무 연기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협동목사-담임목사를 협조하는 목사로서 매년 당회의 시무 연기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원로목사-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로 은퇴시 본 교회 당회의 결의로 추대되며 교회는 응분의 경제적 대우를 한다.

공로목사-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신 목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되 시무를 종결한 분에 한한다.

강도사, 전도사-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직으로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시무한다.

④ 청빙과 사임

Ⓐ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당회가 임명한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청빙하되 당회의 인준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무한다.[총회법기준]**

Ⓑ 담임목사가 사임하고자 하거나 사임을 해야할 때는 당회의 요청으로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 청빙위원회는 당회원과 시무 안수집사 중에서 **5명-10명으로** 구성한다.

제 8장 장로 및 사무직

제 15조 장로

① 직무-시무장로는 항존적으로 목사를 보좌하여 당회원으로 봉사하며, 교인들을 보살피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환자를 방문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돌본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직무를 가진다.

② 자격

Ⓐ 장로는 딤전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시무 안수집사로서 만 3년 이상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만 40세 이상의 남자 교인으로 한다.

Ⓑ 시무 안수집사로서 본 교회에서 주일예배 외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 공적예배에 참여하고, 반드시 일주 생활과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봉사와 헌신을 아낌없이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선출-장로는 본 교회 시무 안수집사로 당회에서 자격을 심사 받은 후에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여 회의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투표로 피택된 후에는 소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불참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④ 시무장로의 수는 교인의 성장에 맞춰서 균형있게 정하되 활동교인 30명에 1명의 장로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무 기간-장로의 시무기간은 6년이며 매 6년이 지나면 1년간 휴무하고 다시 시무를 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출석인원 1/2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고 피선 즉시 당회원이 된다.

시무장로의 정년은 75세가 되는 그 해 말로 한다. 단 시무장로가 2명 이하일 경우에는 휴무와 정년 후에도 계속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다.

⑥ 협동장로 :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로서 본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복음 기초반과 출애굽기반]을 이수하고 등록 만 1년 이상 되면 당회에서 심의하여 임명한다.

협동장로의 시무장로 자격은 협동장로로 3년 이상 봉사한 후 당회에서 자격을 심사 받은 후에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여 회의 출석인원 2/3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투표로 피택된 후 소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불참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단, 안수는 하지 않고 취임선서만 한다.

⑦ 명예 장로 :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충성한 만 75세 이상의 안수 집사로 일주 생활과 주일예배,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등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모범이 되는 자를 당회에서 심의하여 명예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⑧ 원로 장로 : 본 교회에서 10년 이상 시무 장로로 봉사하다가 은퇴한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추대 할 수 있다.

제 16조 안수집사

- ① 직무-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교회의 행정을 돋고 교회의 재정부에 협조하며 봉사의 일을 담당한다. 안수 집사의 수는 당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 ② 자격-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만 3년 이상 신앙생활과 주일예배와 십일조 생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 공적예배 참여와,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만 35세 이상인 자라야 하며, 본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복음 기초반과 출애굽기반]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선출-안수집사 선출은 당회에서 후보자를 심의한 후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 ④ 타 교회에서 전입한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복음 기초반과 출애굽기반]을 이수해야 하며, 만 3년이 경과한 후에 당회에서 심의한 후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투표로 퍼택된 후 소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불참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 ⑤ 안수집사의 정년은 75세가 되는 그 해 말로 한다.

제 17조 서리집사

서리집사의 자격은 남녀 활동 교인 중 신앙생활에 신실하여 모범 되는 자로 당회가 선정하여 매년 연말에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18조 권사

- ① 직무-권사는 목사를 도와서 구역을 돌보며 심방하고 상담함으로 교인들을 격려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
- ③ 자격-여자 서리집사로 등록한지 만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활동교인으로 교인들의 모범이 되며,

기독에 힘쓰고, 말씀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야 한다.

주일예배와 십일조 생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 공적예배 참여와,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만 35세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 과정[복음기초반과 출애굽기반]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선출-장로, 안수집사 추천과 동일하며 투표시 출석인원 1/2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하고,
투표로 피택된 후 소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불참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 ④ 명예권사-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충성한 만 75세 이상의 여자 집사는 당회에서 결의하여 명예
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자격은 명예장로와 동일하다.

제 9장 기관

제 19조 교회의 산하기관은 당회의 결의로 조직한다.

- ① 예배부-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로운 전달과, 찬양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고 질서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돋고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가대, 찬양대, 새 가족 관리, 미디어, 안내, 현금, 성찬, 세례, 꽃꽂이 등을 주관한다.
- ② 재정 관리부-성도들이 드리는 현금 계수, 관리와 예산 수립 등 전반적인 예산과 지출 결산을 집행한다.
- ③ 선교 구제부-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성도들을 훈련시켜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인의 경조사와 지역 사회의 봉사를 담당한다.
- ④ 교육부-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공동체를 만들고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등으로 구성한다.
- ⑤ 건물 관리부-교회 내의 제반 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관리하며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세팅 및 비품과 소모품을 적기에 제공하여 원활한 사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섬긴다.
- ⑥ 환경 미화부-교회 내의 제반 설비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 상태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하도록 관리하여 섬긴다.
- ⑦ 문화 체육부-교회의 각종 행사를 수립 실행한다.
- ⑧ 중보 기도부-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목표로 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

련된 모든 사역을 위한 영적인 힘이 되도록 돋는다.

⑨ 친교부-교회가 성도들 서로에게 친교와 나눔, 휴식의 공간과 시간이 되어지도록 섬긴다. 교회 내의 부서별 친교 행사를 지원하여 화목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의 성도간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섬긴다.

⑩ 청년부-고등부를 졸업하고 미혼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비전공동체이다.

⑪ 한글문화교실

⑫ 전도회-각 전도회는 당회의 권한에 두며 당회가 그 조직 범위를 정하되 친교, 봉사, 훈련, 선교를 위해 각 부서를 둘 수 있는 자치기관이다.

⑬ 교구-교구를 두되 교구 및 구역의 구성 및 중감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구역은 3년에 한번 씩 제비뽑기로 정한다.

⑭ 장로회와 권사회-교회의 자문기관으로 출석하는 모든 장로와 권사로 교회운영에 협력한다.

⑮ 도서 출판부-교회에서 발행되는 새날이야기, 가정예배서 등을 제작 출판한다.

⑯ 감사-매 회계연도 마다 행정 및 행사 그리고 재정부의 예산과 지출을 감사하여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당회가 임명한다.

제 20조 교회의 유급 직원

① 임명 : 교회가 필요로 할 경우, 유급 직원과 유급봉사자들은 당회의 결의로 정하되 그 관리와 인사권은 당회에 속한다.

② 자격 :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른 성경적인 이성관, 결혼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 10장 교회의 재정 및 재산

제 21조 본 교회의 재정은 본 교회 성도 및 외부로부터의 현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 22조 본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은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경과하여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제 23조 교회의 동산은 재정 관리부에서 관리하며 매년 그 관리 상황을 당회에 보고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교회의 부동산은 당회에서 관리하며 매년 그 관리 상황을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제 5장

제 2항 F 참조)

제 24조 은행계좌 개설시 대표자를 당회장으로 하며 서명할 두 사람 이상을 세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하되 교회 수표를 발행하며 서명은 재정부장[차장]이 한다.

제 25조 교회 회계는 은행잔고를 초월하여 발행할 수 없고 은행잔고 \$5,000 미만일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지출을 동결한다.

제 26조 지출은 예산에 근거하여 해당부서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담당 사역자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 지출하되,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은 재정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 27조 지출된 모든 금액은 증빙서류 및 영수증이 첨부되어 5년간 보관한다.

제 28조 예산에 없는 금액이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정부의 결의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9조 회계연도를 매년 12월31일로 마감하며, 재정관리부는 당해 연도의 결산과 신년도 예산안을 당회에서 심의 후 운영위원회를 경과한 후 새해 1월중에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제 30조 각 부서(기관)는 매년 12월 셋째 주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회는 이를 심사한 후 재정부에 이관한다.

제 31조 재정 감사-매년 연말 1년 재정 결산은 당회가 임명한 1명 이상의 감사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필요로 할 경우 임시 감사도 당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 32조 재정부장은 매월 결산보고를 당회에 보고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산은 회기연도에 맞춰서 매년 1월 셋째주일까지 공동회의에 제출한다.

제 33조 재정부 구비서류-각종 영수증 철, 지출결의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현금대장 등을 보관한다.

제 11장 징계와 표창

제 34조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로서 그의 세우신 봄된 교회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회가 이를 시행한다.

제 35조 징계의 목적은 교인들의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신성함과 질서를 유지하고 권면으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 36조 징계의 범위는 공동의회 회원권 정지, 수찬 정지, 권고 사직, 근신, 휴직, 출교 등으로 구분

하며 교단의 법규에 준하여 결정한다. 본 교회에서 받은 안수집사, 장로의 직을 박탈한다.

제 37조 표창은 교회 성장과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고 타 교인의 모범된 자에게는 당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표창의 부상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장 경조사

제 38조

① 결혼

Ⓐ 정의-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결혼으로서 본 교회를 사용 할 수 있다. 본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고난주간을 피해야 한다.

Ⓑ 교회 사용-교인이거나 교인의 자녀가 교회를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3개월 전에 사용허락을 당회에 의뢰한다. 이때 축의금으로 교회에서 \$300.00을 지불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축의금에 해당하는 화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타 교인이 예배당에서 결혼식 또는 친교실 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이때 청원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목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례

교회에서는 교인이거나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조의금으로 \$300.00을 지불한다. 단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경우 조의금에 해당하는 화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 장례예배일 경우에는 예배당에서 발인예배를 드릴 수 없다. 교회장의 경우 고인이 교회에 끼친 공로를 당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한다. 교회장으로 할 경우 교회에서 경비일부를 부담하고 예배당에서 발인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 13장 교회 시설 대여

제 39조 타 교인이 기독교적인 모임으로 성경공부, 찬양연습, 세미나 등을 위하여 사용요청을 할 경우 교회의 행사와 중복되는 시간이 아니면 당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반

기독교적인 행사나 또는 타종교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4장 법규 수정 및 부칙

제 40조 본 행정내규는 공동의회에서 통과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1조 본 행정내규의 수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행정내규 수개정위원회를 당회가 임명하고 개정안을 당회에 보고하여 심사 후에 공동회의에서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 42조 본 교회 운영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RPC헌법에 따른다.

최종 개정안-정관 개정일 2020년 1월25일

최종 개정안-정관 개정일 2026년 2월 1일

모든 규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후부터 적용된다.

2026년도 새날장로교회 운영내규 수 개정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류 근 준

최 영 복

서 달 원

황 의 경

홍 기 범